

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연구

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방송 내용 규제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 공정성의 경우 그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객관성은 상대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법적인 논의도 드물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객관성 위배 여부가 방송 내용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도 객관성 위배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JTBC <뉴스9>의 '다 이빙벨'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1심 법원의 징계취소 판결을 번복하였다. 그 이유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1심과 2심 법원이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송의 '객관성'이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례 중 '객관성' 위반이 제재 사유가 된 경우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방송의 객관성에 대해 판단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원이 객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심의의결 사례 및 판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의 객관성 판단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핵심어: 객관성, 공정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의 자유, 방송심의규정

* 세 분 심사위원님의 조언 덕분에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ahranpark2@gmail.com

1. 문제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6년 상반기 ‘방송심의 의결 현황’에 따르면 중편과 보도채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유 중 객관성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권구성, 2016, 11, 17). 이처럼 방송의 객관성 위반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송 내용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에 대한 판결에서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개념을 혼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최근 JTBC <뉴스 9>의 ‘다이빙 벨’ 보도에 대한 판결에서는 법원이 방송사의 공정성 위반 여부는 검토함이 없이 객관성 위반 여부만을 판단한 바 있어 점차 객관성이 독립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되었는데, 번복 이유는 방송사 징계 기준이 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1심과 2심 법원이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향후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간 방송 내용과 관련된 규제도 객관성보다는 공정성 위배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학문적 연구 또한 공정성의 개념 정의 및 하위 구성요소 분석에 집중되었다(강명구, 1989; 김연식, 2009; 이민웅·이창근·김광수, 1993). 비록 공정성 개념 자체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하였지만(원희영·윤석민, 201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¹⁾는 공정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개념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공정성에 대한 개념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반면, 객관성은 방송심의규정상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법적으로 객관성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공정성보다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설립과 발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신문과는 달리, 방송의 경우 한정된 공적 자원인 전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를 사용하여 공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운영과 내용 형성에 다양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촉진하는 여러 법적인 규제가 허용되고 있다(박용상, 2013). 방송에 대한 규제로서의 방송심의에 대한 국내 연구는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4)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5) 매체와 채널별 차등 심의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주로 수행되어왔다(윤성옥, 2015). 이처럼 방송심의에 대한 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방송통신심의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점이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방송통신심의제도뿐만 아니라 개별 방송심의규정이나 그 기준에 대한 연구도 더욱 중점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방송의 ‘객관성’이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례 중 ‘객관성’이 제재 사유가 된 경우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방송의 객관성에 대해 판단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원이 객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심의의결 사례 및 판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는 한편, 법률적 관점에서 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방송 객관성의 개념

미디어에서 객관성(objectivity)이란 일반적으로 (1) 취재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 즉 주관성이나 개인적 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2) 당파성의 결여, 즉 분쟁에서 특별한 입장을 취하거나 편견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3) 정확성과 여타 진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의미한다(McQuail, 1983). 또한 객관성은 평등의 원칙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미디어는 취재원과 뉴스 대상에 대해 공평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맥퀘일(McQuail, 1986)은 언론은 사회 내의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언론보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객관보도는 불가능하지만 비객관적인 보도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객관적 보도를 추구할 수 있다면, 비객관적 요소로서 당파

성· 선정성· 주관성· 선택성을 들었다.

객관성의 구성요소를 연구한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은 객관성은 크게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성은 정보 원으로부터 확인되었거나 논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나 진술을 다루는 보도 형태를 의미한다. 불편부당성은 ‘중립적 태도’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상반되는 관점에 대해 동등 또는 비례적인 시간, 공간, 중요성을 할애할 것을 요구한다. 웨스터슈탈이 제시한 불편부당성 측면에서 객관성을 판단할 때 결국 객관성은 공정성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명구(1989)도 뉴스 공정성은 보도가 객관적일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적 차원과 정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이데올로기 비판적 차원의 두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상호배타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양대 중심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춘옥(2005)도 객관성과 공정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공정성의 하위개념으로 객관성이 포함되는가 하면 객관성의 필요충분조건이 공정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마라스(Maras, 2013)는 객관성이 “불편부당성, 중립성, 정확성, 공정성, 정직성, 진실에 대한 합치, 탈개인화, 균형” 등의 개념과 종종 결합되면서 이러한 개념적 복합성이 객관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성에 대해 회의적인 엔트먼(Entman, 1989)은 객관성 원칙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탈개인화, 즉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독자적 평가를 뉴스에 삽입하는 것을 삼가는 것, 둘째는 균형성,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비슷하게 주목하는 것을 요소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들은 전문적 규칙과 그들이 속한 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다 보니 편향성을 가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터크먼(Tuchman, 1972)도 언론사와 언론인이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소송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객관성을 전략적 의식(strategic ritual)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알철(Altschull, 1984)도 양쪽 의견이 똑같이 제시되는 양시양비론으로 객관성이 작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권력 기득권층을 보호하게 될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미국의 방송 저널리즘은 1950~1960년대에 기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의 보도만을 강조하는 ‘객관주의 황금시대’를 보냈다. 이후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정부의 거짓말을 그대로 내보낸 방송이 과연 객관적인 방송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1970년대부터는 객관적 사실을 해설해주는 ‘주관적 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되

었다(Hallin, 1996). 한국에서도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사실 중심의 보도는 기존의 권력 질서를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객관 저널리즘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언론인의 비판적 능력을 강조하는 탐사 저널리즘과 가치 개입적 저널리즘이 방송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객관 저널리즘과 주창 저널리즘이 혼재한 실상을 연구한 운영철(2007)은 KBS <뉴스 9>의 진행자는 기자 리포팅이 끝나면 아무런 멘트 없이 다음 기사로 넘어가는 객관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반면,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추적 60분> 진행자는 ‘충정리’ 멘트와 함께 ‘누가 비난받을 대상인지’를 재차 부각시키는 주창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운영철은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진행자들이 이미 판단을 내린 뒤 방송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여러 사실과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형철(2004)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 정신에 투철하지 않고 사영신문처럼 계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수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수가 ‘정보에 깨인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욱(2002)은 저널리즘의 객관성이란 역사적으로는 사실의 단순한 보도가 가진 주관성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된 개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객관성이란 저널리즘 측면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근본원칙으로 여겨져왔고, 저널리즘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 측면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법적 측면에서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법원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판단하는 주된 영역은 보도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므로 법원이 언론의 객관성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기회가 그간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정정·수정·중지, 방송 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방송법 제100조)가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제재조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부터는 법원이 본격적으로 객관성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객관성에 대한 법적 개념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윤성욱(2015)은 방송심의 제재취소 청구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이 양적·질적 공정성 판단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심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장르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윤성욱과 홍성철(2015)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방송심의 대상으로 올라간 안건들이 대체로 제재 결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심의위원들이 법정 제재인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를 선호하고 ‘의견제시’와 같은 제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황성기(2014)는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합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가변적 개념이며,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들, 즉 객관성·사실성·불편부당성·다양성·균형성·중립성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객관성은 공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개념으로서 객관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는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은 어떠한 방송 내용이 객관성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의 객관성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 방송 객관성 관련 법규

전통적으로 언론법에서 방송 개념은 텔레비전, 라디오는 물론이고 그 활동이 공공을 대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수신을 목표로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방송은 존재 형태를 불문하고 언론매체로서 공적 기능 및 통합적 작용에 참여하게 되며,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라는 헌법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다수설과 판례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객관적·법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를 ‘제도적 권리’로서 이해한다(박용상, 2013). 즉,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 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허영, 2007). 이처럼 방송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매체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에서보다 더 크다.²⁾ 이에 따라 방송법³⁾은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그러나 방송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규율은 법적 한계가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한 규율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키고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2) 헌법재판소 선고 2002헌바49 결정(2003. 12. 18).

3)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시행 2016. 7. 28.

표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2절 '객관성'과 관련된 조항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③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보도프로그램 등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⁴⁾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한 규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금지 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원리의 적용을 당연히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 유지 발전이라는 언론 자유의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다.⁵⁾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로서 방송의

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5912 판결(2015. 2. 10).

5) 헌법재판소 선고 2000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2001. 5. 31).

자유는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한편, 주관적 공권으로서 자유권적 측면에서도 최소침해 원칙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청자나 청취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 개인이 방송을 운영하는 주관적 권리는 실현될 수 없으며 방송 운영자의 선정과 허가를 비롯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박용상, 2013). 또한 언론의 자유는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며 시청자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어야 여론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언론은 진실에 적합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법 제6조는 제1항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조항에서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동조 제2항), 소수집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5항). 또한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⁶⁾은 제2절 ‘객관성’이라는 제목 아래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방송의 객관성을 규율하고 있다. 제2절 ‘객관성’과 관련된 조항은 <표 1>과 같다.

이처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하 제15조부터 제18조는 출처 명시, 통계자료 발표, 오보 정정 등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관련된 단편적인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송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⁷⁾ 이러한 판단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법적 판단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송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6) 제정 2008. 6.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9호, 최근 개정 2015. 10.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3호.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으로는 이승선·김재영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소수의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9권 5호, 206-240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과정은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연구문제 1. 객관성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연도별, 조항별, 제재별,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연구문제 2. 객관성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3. 객관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

1) 객관성 심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의결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심의사례집을 분석하여 코딩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의결한 총 3,477건 중에서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징계를 받았거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권고가 내려진 방송 건수는 총 464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으로 나누어보면 <표 2>와 같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지상파방송의 객관성 위반 건수가 유료방송의 객관성 위반 건수의 3배 정도로 많았으나, 2013년에 들어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객관성 위반 건수가 비슷해지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어 유료방송의 객관성

표 2. 객관성 위반 의결건수

(단위: 건)

연도	지상파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유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등)	계
2015	47 (239)	112 (609)	159 (848)
2014	38 (200)	74 (416)	112 (616)
2013	38 (246)	31 (401)	69 (647)
2012	41 (196)	12 (338)	53 (534)
2011	33 (187)	12 (290)	45 (477)
2010	19 (164)	7 (191)	26 (355)
계	216 (1,232)	248 (2,245)	464 (3,477)

주: 괄호 안은 총 의결 건수임.

표 3. 객관성 관련조항(14조~18조)별 분석

(단위: 건)

연도	14조 (객관성)	15조 (출처 명시)	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17조 (오보 정정)	18조 (보도형식의 표현)	계
2015	123	1	35	1	0	160
2014	109	1	2	4	0	116
2013	62	2	8	4	0	76
2012	42	4	10	4	0	60
2011	39	0	6	7	0	52
2010	16	1	12	0	0	29
계	389	9	73	20	0	493

주: 심의사례 한 건에 여러 조항이 위배된 경우 중복 분석함.

위반 건수(74건)가 지상파방송의 위반 건수(38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으며, 2015년에는 유료방송의 객관성 위반 건수(112건)가 지상파방송의 위반 건수(47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유료방송의 객관성 위반 건수가 2013년부터 증가한 것은 2011년 12월 중편이 출범하면서 중편의 객관성 위반 건수가 늘어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성 위반 의결건수의 비율도 지상파방송의 경우 2010년 11.5%에서 2015년 16.8%로 증가했으나, 유료방송의 경우 2010년 3.6%에서 2015년 18.3%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총 의결 건수 중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의결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3%, 2011년 9.4%, 2012년 9.9%, 2013년 10.6%, 2014년 18.1%, 2015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6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 관련조항인 14조(객관성), 15조(출처 명시), 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7조(오보 정정), 18조(보도 형식의 표현) 위반으로 판단된 심의사례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러 조항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 중복으로 코딩했다.

방송보도의 객관성 위반 판단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조항은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이었으며, 그 위반 건수가 총 389건으로 총 분석 사례의 78.9%를 차지하였다. 그다음 이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위반 73건, 제17조(오보 정정) 위반 20건, 제15조(출처 명시) 위반 9건의 순이었으며, 제18조(보도 형식의 표현)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성에 대한 기본적 조항인 제14조가 실제로 방송통신

표 4. 객관성 관련조항 위반 시 제재 현황

(단위: 건)

연도	문제없음	의견 제시	권고	주의	경고	징계	사과	계
2015	0	28	96	27	6	3	0	160
2014	0	21	66	16	8	4	0	115
2013	1	7	37	13	11	10	0	79
2012	0	1	32	15	4	0	1	53
2011	0	0	20	15	7	2	3	47
2010	0	1	18	3	3	0	1	26
계	1	58	269	89	39	19	5	480

주: 한 사안에서 여러 제재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중복 분석함.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방송 형식상 혼동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제18조는 적용된 사례가 없어 그 실용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객관성 관련조항 위반 시 심의결과를 유형별로 코딩한 것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여러 제재가 함께 내려진 경우 중복으로 코딩하였다.

객관성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권고’가 269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주의’ 89건(18.5%), 의견제시 58건(12%), ‘경고’ 39건(8.1%), ‘징계’ 19건(3.9%), ‘사과’ 5건(1.0%) 순이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객관성 위반 보도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전체 사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한 법정제재인 경고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열에 한 건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객관성은 공정성과 함께 중요한 방송심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수준이 경미하다는 것은 객관성 위반으로 의결되는 건수가 과다하게 많거나 위반에 따르는 제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객관성 위반 유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방송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방송심의사례집’을 분석하여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보도의 유형들을 분류해보면 ‘과장 보도’, ‘부주의한 보도’, ‘누락 보도’, ‘허위 보도’, ‘왜곡 보도’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첫째, ‘과장 보도’는 방송 내용의 극적 효과를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과장하거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강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 대상이 된 건축물이 ‘지역 최초’인데도 ‘전국 최초’라고 보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 결정(2015. 4. 15.)을 내렸으며, 망상어에서 발견된 선충은 위험하지 않는 것임에도 인체에 유해한 ‘고래회충’이라고 언급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하여 권고 결정(2015. 5. 27.)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객관성 위반의 유형에서는 그 위배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대체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둘째, 방송사의 실수로 잘못된 자료나 이미지를 내보내는 것이 ‘부주의한 보도’의 대표적인 행태이다. 가령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보도하면서 헌법재판소 로고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로고가 합성된 이미지를 내보낸 뉴스에 대해서는 경고(2015. 8. 27.)가 내려졌으며, ‘일베’가 변형한 서울대 로고를 서울대 관련 기사에 노출한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고결정(2015. 3. 4.)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사진 등 방송 자료를 찾아서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군 입대를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에 대해 동명이인인 가수의 자료영상을 내보낸 지상파 연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결정(2015. 10. 8.)이 내려졌다. 이처럼 인물과 관련하여 잘못된 사진을 내보낼 경우 방송사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형사적·민사적 법적책임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누락 보도’ 유형은 주로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 필수고 지사항을 방송사가 누락하여 보도했을 때 발생한다. 가령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한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결정(2013. 10. 8.)이 내려졌으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응답률 등을 누락한 방송에 대해 권고결정(2015. 3. 4.)이 내려진 바 있다. 단순한 누락 보도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로서 주로 권고결정을 내렸다. 가령 “북 도발, 연천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이라는 자막과 함께 마을이 포격을 받아 폐허가 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이라는 표기 없이 방송한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권고결정(2015. 9. 2.)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누락된 것이기는 하나, 만약 이러한 보도가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전시상황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왜곡 보도’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객관성 위반정도가 중한 사안이었으나, 제재조치

로서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넷째, ‘허위 보도’란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객관성 위반의 대표적인 보도형태라고 할 수 있다. 허위 보도는 방송사가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가령 메르스 전염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사망”이라고 잘못된 내용을 보낸 케이블 뉴스프로그램에 대해 경고결정(2015. 7. 9.)이 내려졌으며, 출연자인 의사를 소개하면서 현 소속 대학교와 출판 저서에 대한 거짓 내용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의 뉴스에 대해서는 권고결정(2013. 9. 25.)이 내려졌다. 범행 장면 CCTV 영상을 단독입수 했다고 보도하면서 영상에 찍힌 범죄와 무관한 시민을 범인이라고 보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의결정(2014. 7. 25.)이 있었다. 또한 허위 보도는 방송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대상자 또는 취재원의 의도적인 거짓말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령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관련된 뉴스에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사칭한 허위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결정(2012. 4. 5.)이 내려지거나, 음식점을 소개하는 아침방송에서 음식점 관계자가 손님인 것처럼 인터뷰한 장면을 내보낸 방송에 대해 권고결정(2012. 8. 29.)이 내려졌다. 허위 보도의 경우 객관성 위반 정도가 심한 편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송사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방송 내용을 왜곡한 경우에는 객관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방송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 보도’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외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하면서 발언 내용을 방송사가 오역하여 내보낸 경우가 있다. 가령 외국의 재난상황에 대한 뉴스에서 외국인 구조대원의 “못 알아듣겠다(I don't understand you)”라는 발언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오역한 방송에 대해 경고결정(2010. 3. 10.)이 내려지거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려면 500달러가 필요하다”는 현지인 인터뷰 내용을 “만 달러 이상이 든다”고 오역한 방송에 대해서도 경고결정(2012. 9. 13.)이 내려졌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로마 현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현지인들의 이름 대신에 이탈리아 유명 축구선수들의 이름을 영터리 자막으로 내보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의결정(2014. 10. 2.)이 내려졌다. 방송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사측에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사안도 있었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검정고시를 거쳐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편집한 후 출연자가 떠돌이 생활을 하며 혼자서 성악을 배웠다고 방송한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징계결정(2011. 7. 14.)이 내려졌으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시민 인터뷰 중 일부만을 편집하여 당사자 의도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을 방송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의결정(2015. 8. 13.)이 내려졌다. 과격 시위 현장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고 전한 뒤 해당 집회와 관계없는 10여 년 전의 사진을 내보낸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징계 및 경고(2015. 6. 25.)가 내려졌으며, 시민들의 올림픽 응원모습을 실시간 중계한다면서 방송사 자사 사무실을 외부업체 사무실인 것처럼 소개한 방송 뉴스에 대해서는 주의결정(2012. 9. 13.)이 내려졌다. 이러한 왜곡 보도의 유형은 객관성 규정의 심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강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보도는 보도의 사실관계가 진실에 합치되지 않거나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왜곡된 경우들로서 보도의 팩트(fact)와 관련 있는 사안들이 많았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의 유형에 따른 제재조치의 수준이 일관적이지 못하였음을 고려해볼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조치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객관성 위반의 정도가 낮은 '과장 보도'나 '부주의한 보도' 및 경미한 '누락 보도'의 경우에는 의견제시나 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객관성 위반의 정도가 높은 '허위 보도'나 '왜곡 보도'의 경우 주의나 경고, 징계 등의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가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실제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송이 객관성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제재의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4. 객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객관성 관련 판례

객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기 위해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 LX'와 '로앤비(LAWnB)'에서 '객관성'과 '언론', '방송' 또는 '보도'를 키워드로 하여 판례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객관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사건은 1994년 KBS 뉴스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 사건은 KBS의 제품 하자에 대한 보도로 인해 기계식 브레이크 제조업자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즉 방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사건이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송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검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도의 '공

표 5. 방송 객관성에 대한 법원 판례

사건 명칭 ⁹⁾	사건 번호	주요 판단내용	최종 승패
CBS<김미화의 여러분>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3구합23266	정책 관련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객관성 위반 아님	방송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6755		
	대법원 2014. 5. 20. 선고 2014두2775		
KBS<추적60분>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1구합10379	정부정책에 대해 논리적 의문 제기한 것은 객관성 위반 아님	방송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591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632		
CBS<김현정의 뉴스쇼>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2449	뉴스프로그램 중 생방송인 터뷰는 해설이나 논평에 가까우므로 출연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객관성 위반 아님	방송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판결 2015누3462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1804		
MBC<뉴스데스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18308	잘못된 그래픽 사용은 객관성 위반임	방송통신위원회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599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RTV<백년전쟁>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한 것은 객관성 위반	방송통신위원회 승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1394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JTBC<뉴스9>통합 진보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9257	여론조사 보도에 왜곡 없어 객관성 위반은 아님. 그러나 뉴스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인 한쪽편 의견만 내보낸 것은 공정성 위반임	방송통신위원회 회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3741		
	대법원 2015. 5. 19. 선고 2015두40040 판결		
JTBC<뉴스9>다이 빙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71085	뉴스프로그램 중 생방송인 터뷰는 해설이나 논평에 가까우므로 반대편 의견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객관성 위반임	방송통신위원회 승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7364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정성'과 '객관성'을 구분하여 방송사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였다. 법원은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로서의 '균형 있는 보도'와 '동일시간이나 동량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로서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⁸⁾ 반면 보도의 객관성이란 "전달자가

8)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93가합21447 판결(1994. 11. 11).

보도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라고 규정하였다. 즉 법원은 공정성의 경우 '양쪽 입장을 골고루 균형 있게 전달하는 보도 태도'라고 보았으며, 객관성의 경우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태도'라고 구분 지었다. 따라서 공정성은 '균형과 형평'에 대한 개념이며, 객관성은 '사실 여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 하에 법원은 기계식 제품을 전자식 제품과 성능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보도의 공정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또한 당해 보도의 목적이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라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으므로 KBS 보도가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당사의 제품에 대한 과신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기자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보도의 객관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다.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제조업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¹⁰⁾ 이 판례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010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불복한 방송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¹¹⁾ 방송의 객관성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은 총 19건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례를 표로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2012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서는 소 값 폭락사태와 정부의 이자율 정책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질문하고 초청된 전문가들이 답하는 대담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며 주의처분을 결정하였다. 특히 라디오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 "정권한테만 좋게 한다"는 방송 표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았다. 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의 자유 측면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시청자

9) 사건 명칭은 판례를 구분하기 위하여 저자가 편의상 임의로 붙인 것이다.

10) 서울고등법원 선고 95나1028 판결(1995. 4. 14).

1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방송법 제32조), 제재조치를 명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다(방송법 제100조). 따라서 소송에서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나 청취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²⁾ 따라서 당해 라디오 프로그램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까우며 방송의 내용이 된 비판적 표현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토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결과에 대한 원인 설명을 일부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송이 공정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또한 객관성에 대해 법원은 (1) 문제가 된 발언이 ‘사실(事實)의 적시(揭示)’라기보다는 정부의 태도나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2) 표현의 정도에 있어서 정책 담당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지속적인 표현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조치처분을 취소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¹³⁾ 대법원도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CBS의 승소로 확정되었다.¹⁴⁾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뉴스가 아닌 논평 프로그램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일 경우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및 국민의 ‘알 권리’라는 요소가 공정성과 객관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KBS <추적 60분>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의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한 ‘천안함’ 편을 제작 및 방영하였고,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며 경고처분을 내렸다. KBS가 제기한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공정성은 ‘양적 균형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쟁점은 자연현상처럼 관찰자가 분리될 수 있어 제3자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대립하는 입장에 관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⁵⁾ 또한 방송은 매체, 채널,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고 각자의 양식과 형태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므로 그 성격에 따라 공정성 심사를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적균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선거방송이나 객관적 사실의 보도에 중점을 두는 뉴스보도 및 대립되는 견해를 대등하게 논의하는 토론방송 등과는

1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23266 판결(2013. 5. 14).

1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누16755 판결(2014. 1. 8).

14) 대법원 선고 2014두2775 판결(2014. 5. 20).

15)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10379 판결(2014. 6. 13).

‘다른 기준’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균형성 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당해 방송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에 관한 것”이므로 <김미화의 여러분>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라는 측면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은 KBS가 합동조사단 측에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방송된 사실들도 특별한 조작이나 변형도 없었으므로 객관성 유지 의무를 준수한 것이라고 보았다.

천안함 보도 사건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객관성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¹⁶⁾ 방송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었는지 여부는 “그 방송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방송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따라서 당해 방송이 정부가 입론한 과학적 사실이 합리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았고,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함과 아울러 논리적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쳤다면 ‘충분히 신중한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수의 입법례에서 국가에 의한 공정성 심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반면에 국가가 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해 스스로 반박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내용을 담고 있거나 진실을 오인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보도에 대한 제재 권한 행사에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뉴욕 타임즈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¹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언론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하에서는 미국의 설리번 판결에서 제시된 것처럼 공적인 토의는 우리 정부의 본질적인 원칙이자 정치적 의무이며, 이러한 토의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할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된다

1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5912 판결(2015. 2. 10).

17) 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2002. 1. 22) 인용.

18)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고 할지라도 결코 억제되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 정부 기관의 공식적 조사발표를 대상으로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언론 자유의 보장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진실하고 투명하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개방된 정치 체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야말로 표현매체의 기술적·사회적 발전으로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누릴 국가 안보를 위한 최고의 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해당 방송은 추가적 토론과 검증, 국민들의 신뢰 형성을 위한 소통을 촉구한 것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2015년 7월 대법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은 KBS의 승소로 확정되었다.¹⁹⁾

2013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은 한 성직자를 인터뷰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발언하는 출연자에 대해 진행자가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하였다며 공정성 및 객관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의처분을 내렸다. 제재조치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과 객관성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⁰⁾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 부분은 뉴스보다는 해설이나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우므로 더욱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논쟁 방식이 아닌 인터뷰에서는 반론이나 비판을 제기하기 어려우며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다. 그 결과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진위를 파헤치지 않았다고 하여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터뷰 직후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청취자가 출연자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도 취했다는 점과 출연자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개선'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결국 1심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

19) 대법원 선고 2015두1632 판결(2015. 7. 9).

20)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62449 판결(2015. 1. 22).

명령을 취소하였으며, 이 판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CBS가 승소하였다.²¹⁾

2013년 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모 대학 설립자의 횡령 사실을 보도하면서 문재인 의원의 실루엣 사진을 횡령범 사진으로 잘못 내보내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실루엣을 알아본 일부 시청자들이 실제로 항의하는 등 뉴스데스크가 문재인 의원이 횡령범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하였으므로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²²⁾ 따라서 잘못된 실루엣 사용은 컴퓨터 그래픽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고 고의가 아니어서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방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C는 제재 조치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과잉제재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²³⁾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방송사의 패소로 확정되었다.²⁴⁾

RTV가 2013년 1월 방송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규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RTV가 시민방송이라고 하여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²⁵⁾ 법원은 역사적 위인을 재조명을 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역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추측이나 과장·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하여 그 위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승만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인물이 작성한 자료를 방송사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인 방송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RTV는 역사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 및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 및 재구성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였다.²⁶⁾

21)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34627 판결(2015. 8. 19), 대법원 선고 2015두51804 판결(2015. 12. 23).

2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18308 판결(2014. 2. 28).

2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45996 판결(2014. 10. 2).

24) 대법원 선고 2014두43974 판결(2015. 3. 12).

25)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2014. 8. 28).

2013년 11월 JTBC <뉴스 9>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출연시키는 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도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자는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하였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방송 종류에 따른 공정성 판단을 위해 <뉴스 9>의 성격을 검토하였다.²⁷⁾ 법원은 <뉴스 9>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출연시켜 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이는 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편성방식일 뿐, <뉴스 9>은 본질적으로 뉴스보도 프로그램이며 탐사보도나 토론방송, 시사관련 대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지상파 방송이 아닌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해서 지상파에 비해 완화된 공정성 요건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정성이 비록 양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쪽 의견만을 내보내고 반대쪽 입장을 가진 자들을 출연시키지 않거나 반대의견에 대한 전화 통화 내지 외부 촬영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 위반이라고 보았다. 반면 뉴스 진행자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므로 객관성 위반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공정성을 위반한 보도에 대한 징계처분은 타당하다며 JTBC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²⁸⁾과 대법원²⁹⁾도 방송사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여 JTBC의 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2) JTBC 뉴스와 객관성에 대한 최근 판결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 JTBC <뉴스 9>에서는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방송 스튜디오에서 해난구조전문가 이종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잠수사들의 수중작업을 도와주는 구조물인 ‘다이빙벨’을 활용할 경우 선체수색작업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진행자는 다이빙벨이 무엇인지, 실제로 활용된 바가 있는지를 질문했으며 이종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과 설명을 제공하였다.³⁰⁾ 이러한 방송이 나간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

2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61394 판결(2015. 7. 15). 이 사건은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7)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9257 판결(2014. 9. 18).

28)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63741 판결(2015. 3. 17).

29) 대법원 선고 2015두40040 판결(2015. 5. 19).

30) 특히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진행자가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혹시 가시면 안됩니까?”라는 질문과 이종인의 “거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이런 거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해경이) 어떤 주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체계에

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는 이유로 방송심의규정 제14조 및 재난방송에 대한 조항인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³¹⁾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사유였던 객관성 규정 위반 여부에만 판단의 초점을 맞추었고,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송 객관성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심 판결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객관성 규정(제14조)과 구 심의규정상 재난방송에 대한 조항(제24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불명확한 정보를 방송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사실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²⁾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가 된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쟁점인 ①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 작업 가능한 기술이며, ② 사고현장에 다이빙벨을 투입한다면 2, 3일 내에 세월호 3, 4층 화물칸에 대한 수색을 마칠 수 있다는 주장의 허위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에 불과하여 인터뷰 내용의 허위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뉴스 프로그램 중 인터뷰 형식을 취한 경우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방송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함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증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JTBC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검토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의 특성을 검토하였다.³³⁾ 방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매체별·채널별 특성'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심의할 때 고려될 요소이지만, 법원은 객관성 준수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매체별·채널별 특성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서는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이하 생략)"라는 대화내용이었다.

31)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 재난 등에 따른 피해 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71085 판결(2015. 5. 21).

3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47364 판결(2016. 1. 21).

〈뉴스9〉이 재난방송을 하고 있던 뉴스 프로그램이므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더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방영할 필요성이 다른 뉴스 프로그램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인터뷰 이후 다이빙벨이 실제로 구조작업에 투입되었으나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터뷰는 “다이빙벨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부분이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진행자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연설명을 하여 시청자가 비판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진행자는 이종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어 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해당 방송은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들을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객관성 규정과 재난방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JTBC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JTBC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 판결에 대한 논의

법원의 객관성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법원은 공정성의 경우 ‘양쪽 입장을 골고루 균형 있게 전달하는 보도 태도’를 의미하고, 객관성의 경우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태도’라고 판단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미를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판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천안함 보도 사건에서 “대립하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거나, 다이빙벨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다른 쪽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적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을 공정성 위반이 아닌 객관성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그 일례다. 따라서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공정성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성 위반이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개념에 대해 법원의 구체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저널리즘 원칙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는 하나, 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명확하게 분리되어 판단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법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객관성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 것인가. 법정에서 객관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이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 보도했는지 여부, 즉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의 '진실 여부'가 그 기준으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진실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일련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사실적시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는 민사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³⁴⁾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기준은 법원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³⁵⁾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법적 의미에서 방송의 객관성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여부'이며,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성의 기준 하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바 있다.³⁶⁾ 따라서 방송내용이 의견이나 논평인 경우에도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객관성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이빙벨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진행자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연설명을 제기하지 않아서 객관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한 것은 객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며, 법원은 <뉴스 9>의 보도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프로그램 제작당시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객관성 판단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방송은 매체, 채널,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심사 기준이

34) 대법원 선고 85다카29 판결(1988. 10. 11).

35) 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2006. 3. 23); 대법원 선고 2007다2268 판결(2007. 9. 6); 대법원 선고 2009다4976 판결(2009. 10. 29).

36) 대법원 선고 98다31356 판결(1999. 2. 9).

달리 적용되어야 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은 방송 프로그램별로도 판단 기준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방송이나 뉴스보다는 탐사보도나 논평의 경우 더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이빙벨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뉴스9>이 뉴스의 형식을 갖췄으나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은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면서도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현정의 뉴스쇼> 판결에서 해설·논평 프로그램의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진위를 파헤치지 않았다고 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다이빙벨 판결에서도 생방송 인터뷰 부분에 이러한 완화된 법리가 적용되었다면 방송 진행자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위를 파헤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었을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판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내용이 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던 <김미화의 여러분> 사건, <추적 60분> 사건, <김현정의 뉴스쇼> 사건들은 결국 법원에서 객관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표현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에서 밝혔듯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보도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언론이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을 촉구할 경우 방송보도의 내용이 된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가 객관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설령 사소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방송보도는 객관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천안함 보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하였듯이 공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한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논의가 억제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

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공적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야말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객관성은 기본적으로 '사실(fact)'을 객관적으로 다루었는지, 즉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다. 방송 진행자나 참가자의 주관적인 '의견(opinion)'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을 통해 보도된 의견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양쪽 의견 간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균형이 맞는지 등은 객관성이 아닌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내용의 객관성을 판단할 때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방송의 내용과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문제가 된 표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의 위법성만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뉴스가 아닌 논평이나 해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공적 이슈에 대한 방송일 경우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및 국민의 '알 권리'라는 요소가 객관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밝힌 주관적 의견이 문제가 된 경우 그러한 의견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방송 측에 '팩트 체크(fact checking)'의 책임을 지우거나, 그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방송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방송출연자의 의견이나 의견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방송사가 부담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기 검열(self censorship)'을 초래할 수 있어 논쟁적인 사안의 경우 제대로 그 내용이 시청자나 청취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언론 자유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인 예르실드 대 덴마크(Jersild v. Denmark)³⁷⁾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이 사건은 1985년 덴마크 기자 예르실드가 인종차별집단인 '그린 재킷(Green Jacket)' 멤버들을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라디오로 방송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린 재킷' 멤버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차별적 발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해당 발언을 한 '그린 재킷' 멤버들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한 예르실드 기자도 함께 덴마크 형법상 혐오표현(hate speech) 혐의로 기소되었다. 덴마크 법원은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자극했으며, 그러한 발언을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하여 인종적 혐오를 조장하였다며 기자에 대해서도 유죄

37) Decided on September 23, 1994, No. 15890/89.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덴마크 법원의 유죄판결은 기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은 사회에서 ‘공적 감시견(public watchdog)’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뷰 내용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게 묻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인터뷰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언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향후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시대에 방송 형태와 프로그램 성격이 혼종화되면서 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각각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한 제재는 방송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와 관련된 판단기준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이빙벨 판결’에서 보았듯이 객관성은 공정성과 분리되어 법원의 독립된 판단기준으로 작동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에 관한 기준으로 객관성을 판단하거나 이들 간의 경계를 흐리는 것은 두 기준을 별개로 규정한 방송심의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판단을 모호하게 하여 때로는 방송에 과도한 제재가 행해지게 하거나 때로는 방송에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장애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명구 (1989). 탈사실시대에 있어 뉴스 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통권 26호, 85-111.
-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 강형철 (2004). <공영방송론: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 서울: 나남.
- 권구성 (2016, 11, 17). 지상파, '부당광고' 여전... 중편은 '객관성' 위반.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1/17/20161117000918.html>
- 김연식 (2009).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61-186.
- 김영옥 (2002). <저널리즘의 객관성>.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준옥 (2005). <방송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용상 (2013). <언론의 자유>. 서울: 박영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2010년 방송심의 사례집>.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2011년 방송심의 사례집>.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2012년 방송심의 사례집>.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2013년 방송심의 사례집>.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2014년 방송심의 사례집>.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원희영 · 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 윤성옥 (2015). 방송심의 제재와 방송의 자유 보호에 관한 법원 판결 분석. <언론과 법>, 14권 3호, 115-147.
- 윤성옥 · 홍성철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권 3호, 131-171.
- 윤영철 (2007). 방송 저널리즘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 개입에 관한 연구: <KBS 뉴스9>, <생방송 시사투나잇>, <추적 60분>의 비교분석. <언론정보연구>, 44권 1호, 37-64.
- 이민웅 · 이창근 · 김광수 (1993). 보도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연구>, 여름호 192-209.
- 이승선 · 김재영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소수의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9권 5호, 206-240.
- 허영 (2007).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박영사.
- 황성기 (2014).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권 1호, 93-118.

- Altschull, J. H. (1984). *Agent of power: The role of news media in human affairs*. New York, NY: Longman.
- Entman, R. M. (1989). *Democracy without citizens: Media and the decay of American politic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n, D. C. (1996). Commercialism and professionalism in the American news media.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 243-264). London, UK: Arnold.
- Maras, S. (2013). *Objectivity in journalism*. Cambridge, UK: Polity.
- McQuail, D. (1983).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cQuail, D. (1986). From bias to objectivity and back: Concepts of news performance and a pluralistic alternative. In T. McCormack (Ed.), *Studies in Communication* (pp. 1-36). Greenwich, CT: JAI.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최초 투고일 2016년 10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1월 30일

Abstract

The Concept of Objectivity in Broadcasting from a Legal Perspective

Ahran Park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The concept of objectivity and fairness is substantial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broadcasting. Nonetheless, the notion of “objectivity”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fairness” or “impartiality.” But the importance of objectivity as a broadcasting standard has been increasing in a legal perspective. For instance, the Seoul High Court in 2016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in the JTBC <News 9> case, holding that JTBC violated an objectivity standard by ignoring other side’s opinions. Also, several court cases illustrate how the objectivity standard has been utilized to regulate contents of broadcasting.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courts and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have yet to provide a clear guideline to determine the concept of objectivity in broadcasting. Also, it argues that courts should have considered the differences between broadcasting channels and programs. This article claims that courts should carefully apply the objectivity standard to broadcasting for more freedom of the press, especially in cases related to ‘public interest.’

Keywords: objectivity, fairnes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reedom of the press